

소송업무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송업무규정

제정 2009.10. 1 규정 제 10호

개정 2013. 9.27 규정 제 99호

개정 2017.12. 1 규정 제169호

개정 2018. 5.15 규정 제177호

개정 2018.12.31 규정 제190호

개정 2020. 7. 2 규정 제224호

개정 2020.11.23 규정 제234호

개정 2021.12. 9 규정 제258호

개정 2022. 4.28 규정 제266호

전부개정 2022.12.13 규정 제27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관련한 소송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비송사건 등과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행한 직무상의 행위로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주택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명도소송은 제외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공사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는 사외변호사, 사내변호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7조에 따라 선임된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사건의 소송 대리 허가를 받은 직원을 말한다.

3. “소송발생부서”란 소송 발생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본사 부서, 지역본부, 특별본부 및 사업본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주무부서”란 소송발생부서가 본사 부서가 아닌 경우 소송 발생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주관하는 본사 부서를 말한다.

5. “소송총괄부서”란 소송의 제기, 응소 등 공사 소송 전반에 대하여 총괄하는 본사 소송부서를 말한다.

6. “소송비용”이란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종결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담하는 소송수행 중 소요된 착수금, 승소보수금, 소송 부대비용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소송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소송업무 수행절차

제4조(소송수행부서)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이하 “소송총괄부서장” 이라 한다)은 소송을 총괄하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소송(이하 “소송총괄부서 수행소송” 이라 한다)을 수행한다.

② 소송발생부서의 장(이하 “소송발생부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소송(이하 “소송발생부서 수행소송” 이라 한다)을 수행한다.

1. 소유권 이전등기·말소등기 등 등기와 관련된 소송
2. 토지 또는 건물의 인도·철거 등과 관련한 소송
3.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수용재결처분취소소송 포함), 이주대책대상 자제외처분 취소청구소송 등 이주·생활대책 관련 소송
4. 임대보증금과 관련된 전부금, 추심금, 양수금 청구소송
5. 입주민이 상대방인 소송을 제외한 하자 관련 소송
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등 확인의 소송
7. 민사소송 중 소송물가액이 5억원 이하인 사건
8. 소송총괄부서장이 소송발생부서장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다음 각 목의 소송
 - 가. 선행사건이 소송계속 중이거나, 확정판결 등으로 주요 법리 및 사실관계가 정형화된 사건
 - 나. 소송물가액이 제7호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나 청구원인 등이 단순·명료한 사건

다. 제소 기한 임박 등으로 소송총괄부서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건

③ 소송총괄부서장 및 소송발생부서장은 소송방침(사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여 제소, 응소, 상소, 항고, 심급별 소송대리인 선정 등 소송수행을 하고, 관련 부서장은 소송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소송발생부서장은 소송발생부서 수행소송 중 소송총괄부서장이 지정하는 소송의 제소, 응소, 심급별 소송대리인 선정, 상소(신청 사건 제외) 여부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소송발생부서장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소송발생부서 수행소송의 소송경과를 소송총괄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수행 의뢰) ① 소송발생부서가 본사 부서인 경우 소송발생부서장이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소송수행을 의뢰하기 전에 소송총괄부서장과 협의한 후 소송방침을 정하여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소송수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소송발생부서가 본사 부서가 아닌 경우 소송발생부서장이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소송수행을 의뢰하기 전에 소송총괄부서장 및 주무부서의 장(이하 “주무부서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후 주무부서장에게 의뢰 요청을 하여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주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소송수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소송발생부서 수행소송 중 소송총괄부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송발생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소송수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소송총괄부서장은 주무부서장이 의뢰한 소송에 대하여 소송방침을 확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경과를 통지한다.

⑤ 제소의 경우 소송발생부서장은 제소 기한 30일 전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이관) 소송총괄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송발생부서 수행소송을 이관받아 수행한다.

제7조(소송수행 보조자) ① 소송총괄부서 수행소송의 경우 소송발생부서의 담당 부장 및 담당 부장이 지정하는 직원은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그 사건의 소송수행 보조자가 된다.

② 소송수행 보조자는 소송총괄부서장 또는 소송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 조사, 작성 및 제출
2. 변론기일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기일에서의 출석 및 입회
3. 하자소송의 경우 하자감정착수회의 참석 및 하자조사 입회
4. 사내전산망 소송관리부문에 수행 중인 소송자료의 입력 및 관리

5. 그 밖에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소송수행 보조자가 소송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소송총괄부서장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제8조(임직원 소송 지원) ①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행한 직무상의 행위로 인하여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소송발생부서장은 사건 경위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제소 또는 응소 등 법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송총괄부서장이 정한다.

제9조(소송고지 및 보전조치) 소송총괄부서장 및 소송발생부서장은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소송고지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목적물 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상소 등) ① 법원의 판결에 상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호사의 의견 등을 검토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승소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상소의 이익이 경미한 경우

③ 소의 취하, 화해, 조정,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소송의 탈퇴, 상소의 포기 등 중요한 소송행위를 하려는 경우로서 그 소송물가액이 30억원 이상인 때에는 미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영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소송이 아닌 경우로서 소송발생부서(필요시 주무부서)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는 사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제11조(소송 진행상황 통지 및 조치 요청) ①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총괄부서 수행소송과 관련하여 주무부서장 및 소송발생부서장에게 해당 소송의 진행상황을 통지하고 소송자료 제출, 증인 출석, 사실확인서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소송총괄부서장은 수행하고 있는 소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사본을 첨부하여 주무부서장 및 소송발생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정 및 화해 등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을 수용하려는 경우

2. 심급별 판결이 선고된 경우

3. 소송이 확정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주무부서장 및 소송발생부서장은 소송자료 제출, 증인 출석, 사실확인서 제출, 소송 종결 또는 상소 여부 의견 제시, 판결에 따른 채무의 이행, 채권의 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소송발생부서장은 소송발생부서 수행소송의 소장이 접수되거나, 심급별 판결이 선고되거나, 소송이 확정된 경우 소송총괄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소송비용 등 회수 및 지급) ① 소송총괄부서 수행소송의 공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총괄부서장은 단서 각 호의 소송비용 회수 적정성 검토에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확정일로부터 4개월 내(법무부 소송지휘 대상인 경우 확정일로부터 3개월 내 소송지휘를 받은 후 확정일로부터 4개월 내)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이 송달된 후 그 정본을 첨부하여 소송발생부서장에게 송달일로부터 2개월 내에 통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지정하여 소송비용의 회수가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소송비용의 회수가 적당하지 않거나 회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어 제33조의 소송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소송발생부서장은 상대방에게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송비용 납부 최고 등을 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회생, 파산, 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2.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할 수 있는 소송비용이 적은 경우

3.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4. 다수당사자 소송,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제33조의 소송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

5. 그 밖에 소송비용의 회수가 적당하지 않거나 회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어 제33조의 소송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

③ 소송총괄부서 수행소송의 공사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상대방이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그 확정결정문이 공사로 송달되면 소송총괄부서장은 그 정본을 첨부하여 소송발생부서장에게 통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소송발생부서장은 소송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의 청구가 들어오면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⑤ 소송총괄부서 수행소송의 소송종결 등으로 담보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소송총괄부서장은 법원에 담보취소결정 신청을 하고,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공탁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⑥ 소송발생부서 수행소송은 소송발생부서장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소송비용의 회수 및 지급, 담보 취소결정 신청 및 공탁금 회수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제13조(강제집행 등) ① 소송발생부서장은 소송이 종결된 경우에는 그 판결의 내용에 따른 채권의 행사, 채무의 이행 및 강제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가압류·압류·가처분된 공사예금계좌 및 부동산 등이 있을 경우 해제 조치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부서 수행소송의 경우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발생부서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한다.

③ 강제집행의 경우로서 채무자의 행방불명, 무자력 등으로 그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한다. 다만, 채무자의 주소가 확인되거나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다시 강제집행을 추진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장래에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결손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소송협의체 구성) ①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사건의 주요 쟁점사항 등의 검토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장, 소송총괄부서 부장, 주무부서장 또는 주무부서 부장, 지역본부(특별본부 및 사업본부 포함) 처장 또는 부장, 사내변호사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필요로

하는 자로 소송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소송발생부서 수행 소송의 경우에는 소송발생부서장이 해당 소송 관련 부장, 사내변호사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필요로 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소송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하자소송의 경우 소송총괄부서장이 소송사건의 전문성, 난이도, 중대성을 고려하여 기술기준, 주택설계 및 시공품질 등을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부장을 소송협의체 구성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제도개선 권고)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수행 도중 및 소송종결 이후 제도개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무부서장 또는 소송발생부서장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3장 소송비용

제16조(소송물가액 산정) 변호사보수의 산정을 위한 소송물가액은 대법원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소송의 내용이나 성질을 고려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변호사보수 구분 및 지급 방법) 변호사보수는 착수금과 승소보수금으로 구분하고, 부가가치세는 따로 지급한다.

제18조(착수금 산정) ① 착수금은 소송물가액을 기초로 별표1 착수금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5천만원을 초과하여 산출되는 경우에는 5천만원(소송물가액이 1천억원 초과하는 조세소송으로서 1억원을 초과하여 산출되는 경우에는 1억원)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송사건 및 비송사건에 대하여는 별표1 착수금 산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그 보수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소송총괄부서장이 정한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5천만원(소송물가액이 1천억원 초과하는 조세소송으로서 1억원을 초과하여 산출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비재산권상의 사건 및 재산권상의 청구로서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사건
2. 소송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소송물가액을 기초로 산출되는 착수금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3.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외한 행정사건
4.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에 관한 제소사건
5. 국세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인세 등에 관한 제소사건
6. 형사사건
7. 다수의 지장물 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에 관한 사건
8. 헌법소원사건
9. 공동주택 하자소송

- ③ 소송의 내용이나 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1항의 금액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 ④ 소송 진행 중 소송물가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정도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재산정한 착수금 범위에서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지급한다.
- ⑤ 상급심의 착수금 기준도 원심 착수금의 산정기준과 같다. 다만, 소송물가액이 증감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 ⑥ 같은 목적물에 대한 재소송 또는 재심사건을 같은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원심 착수금의 2분의 1 이하로 한다.
- ⑦ 상고심 사건에 있어 공사 상고부분에 대한 파기환송이 있는 경우에는 환송심 착수금으로 상고심 착수금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다만, 환송심 착수 시 소송대리인이 변경되는 경우는 착수금 전부를 지급한다.
- ⑧ 가압류 및 가처분사건의 착수금은 본안소송 착수금의 2분의 1 이하로 하며 본안소송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그 보수를 정할 수 있다. 다만, 공사중지가처분 등 본안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본안소송과 동일하게 착수금을 산정할 수 있다.
- ⑨ 공사가 신청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 해제 신청 사건, 공사가 신청한 담보취소 신청 사건 및 공사가 당사자인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사건은 착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⑩ 강제집행 및 강제집행정지 사건의 착수금은 본안소송 착수금의 4분의 1 이하로 하고, 그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승소보수금 산정) ① 본안소송의 승소보수금은 전부 승소의 경우에 착수금의 1배를 지급하며, 일부 승소의 경우에는 그 승소의 정도, 소송수행의 난이도, 소송결과에의 공사에 대한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적정수준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경영상의 중요한 소송은 사장의 승인을 받아 승소보수금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상고심 사건에 있어 공사 상고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파기환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부 승소로 본다.

③ 가압류 및 가처분 사건은 심문절차 등을 거치는 경우에 한정하여 승소보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사중지 가처분 등 본안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심문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8조제9항의 신청 사건, 강제집행 및 강제집행정지 사건의 승소보수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소보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사건 변론의 경과, 변론의 성숙도, 변론기간 등을 참작하여 필요한 경우 착수금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공사가 원고인 경우 피고의 자백 또는 의제자백에 따른 승소의 판결

(무변론 판결 포함)이 있는 경우

2. 소의 취하(쌍불취하를 포함한다),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본안 심리전 각하판결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송이 종결된 경우

3. 승소율이 50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소가능성은 낮으나 경영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으로서, 경영상 법원의 판단(항소, 상고 포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소송물가액을 기초로 산정된 변호사보수 중 착수금은 변호사보수의 1/5 이내로 지급하고, 승소보수금은 변호사보수에서 착수금을 뺀 금액 이내에서 승소의 정도 등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⑦ 보상금증액소송(제1심에 한한다)의 경우 별표2 보상금 증액소송 제1심 승소보수금 산정기준에 따라 승소보수금을 지급한다.

제20조(소송 부대비용) ① 변호사보수와 별도로 인지대, 송달료, 출장여비, 감정료, 용역료 등 소송수행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장여비는 공사의 1급 직원의 여비에 준하여 산출한다.

③ 변호사보수 및 제1항에서 정한 소송 부대비용은 소송을 수행한 부서장이 지급한다. 다만, 소송총괄부서장이 요청한 경우 소송발생부서장이 지급한다.

제4장 소송대리인

제21조(소송대리인) 소송은 원칙적으로 사외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내변호사 또는 임직원이 수행할 수 있고 사내변호사에 대하여는 소송수행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소송대리인 선임) ① 변호사에게 소송수행을 위임하는 경우 소송의 난이도,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공모를 통한 경쟁방식 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임하고,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보상금증액소송 제1심에 한한다)에 따른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받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다만, 소송위임계약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수정할 수 있다.

② 공모시 개인정보 및 업무상 비밀 보호 등을 위하여 사건명, 소가, 사건 개요 등 필수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향서를 받은 후 소송총괄부서장이 그 의향서를 평가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자를 선정할 수 있고,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③ 공모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 중에서 과반수가 참석하는 소송대리인 선임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1. 소송총괄부서장
2. 소송총괄부서의 담당부장

3. 주무부서의 담당부장

4. 소송발생부서의 담당부장

5. 법학교수 또는 사외변호사 1인

④ 소송대리인 선임 평가위원회는 응모자가 제출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제안서 등을 별표3 제안서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고득점자를 결정하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국가소송, 행정소송 등 법무부 등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경우

2. 공모 유찰, 불변기간 도과 임박,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긴급한 경우

3. 이전 심급 또는 관련사건 수임 등으로 특정 변호사 선임이 효율적인 경우

4. 착수금이 2천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인 경우

5. 그 밖에 사건의 성격과 내용상 전문성을 요하거나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⑥ 제5항의 경우 제26조의 법률고문 및 제32조의 자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다만, 해당사건에 관한 전문지식, 소송수행능력, 사무소 소재지, 사건의 성격과 내용 등을 감안하여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23조(소송대리인 의무) ① 소송대리인은 위임의 내용에 따라 그 수임사무를 신의에 좇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송대리인은 업무상 알게 된 공사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소송대리인 선임 편중 금지) ① 공사는 소송대리인 1인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각각 초과하지 않도록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 전년도 공사에서 발생한 신규 소송(동일 사건에 대해 심급을 달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총건수의 20퍼센트를 넘지 않을 것(소수점 이하 버림)

2. 전년도 공사가 지급한 총 착수금의 20퍼센트를 넘지 않을 것(소수점 이하 버림)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은 소송총괄부서와 지역본부별로 각각 산정한다.

③ 소송총괄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특정 지구 또는 특정 유형의 소송을 지정하여 제1항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의 전문성 및 수행경력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제25조(퇴직자 소송대리인 수의계약 금지) 공사의 임직원 및 사내변호사로 재직하였던 자는 퇴직 후 2년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사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제5장 법률고문 및 자문변호사

제26조(법률고문) 공사는 업무 전반에 관하여 법률상의 소송 및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장이 위촉하는 법률고문을 둔다.

제27조(법률고문 운영 기준) ① 공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법률고문 위촉 및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률고문은 공모방식으로 선정한다. 다만, 응모자 부족, 결원의 충원 등 공모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 단체의 추천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③ 법률고문의 위촉에 따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후 재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촉기간 및 연임제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위촉에 따른 연임제한은 최장 6년으로 한다.

2. 제1호의 연임제한에 해당되어 재위촉이 금지되는 법률고문(개인의 경우 소속법무법인, 법무법인의 경우 전담변호사를 포함)이 추후 공모를 통하여 위촉된 경우에는 연임제한은 최장 4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기간은 각 위촉기간을 최소 1년으로 보고 1년을 초과할 경우 연 단위로 반올림한 후 각 위촉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률고문의 추가 위촉이 필요할 경우 다른 법률

고문의 위촉기간을 고려하여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 법률고문 위촉기간 만료까지 다음 법률고문이 위촉되지 않은 경우 다음 법률고문 위촉시까지 기존 법률고문 지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⑤ 법률고문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자 중 공모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사실이 없고, 제3항의 연임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⑥ 법률고문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법률고문 추천심사위원회) ① 공모방식으로 법률고문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 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법률고문 지원서 등 공사에서 정한 서류를 별표4 법률고문 공모 심사표에 따라 심사한다.

② 추천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 위원이 과반수이어야 한다.

③ 추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소송총괄부서장이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선정한다.

1. 소송총괄부서 부장

2. 공사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법무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차장급 이상 직원

3. 법학교수 또는 판사·검사·변호사로서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4. 그 밖에 법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필요시 사전심사 및 추천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송총괄부서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법률고문 의무) ① 법률고문은 신의에 좇아 소송 또는 자문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법률고문은 공사와의 이해충돌이 있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며, 해당 사건을 수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사는 법률고문의 해촉, 소송위임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1. 사건수행과 관련된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 및 청탁
2. 공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4.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그 밖에 공사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

제30조(법률고문 해촉) 공사는 법률고문이 위촉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촉기간 도중 해촉할 수 있다.

1. 소송 또는 자문 수행 중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소송 또는 자문 수행 중 알게 된 공사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제27조제5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5. 소송수행경력 및 징계사실 등 위촉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6.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31조(법률고문 재위촉 및 선정 제한) ① 공사는 위촉기간 만료 전에 법률고문이 최근 위촉기간 중 수행한 자문 또는 소송에 대하여 충실도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가 저조한 법률고문을 재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위촉이 되지 않을 법률고문은 다음 공모에서 법률고문으로 선정될 수 없다.

③ 제1항의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사장이 정한다.

제32조(자문변호사) ① 지역본부는 필요에 따라 5인 이내의 자문변호사를 둘 수 있다.

② 자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7조부터 제31조를 준용한다.

제6장 소송심의위원회

제33조(소송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송총괄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소 및 응소 방침 등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전사적인 소송 및 분쟁 현안으로서 신속한 해결이 요구되는 사항
3. 임직원 소송 지원의 범위 및 비용 회수 등 지원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및 소송비용 회수 포기에 관한 중요 사항
5. 그 밖에 소송관련 업무 중 위원장이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송총괄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소송총괄부서 부장
 2. 주무부서장 또는 주무부서 부장
 3. 지역본부(특별본부 및 사업본부 포함) 처장 또는 부장
 4. 사내변호사
 5. 그 밖에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관련부서 부장급 이상의 직원
 6. 제33조제3호 관련 안건 또는 심의안건이 중대하거나 심의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교수, 변호사, 공무원 등 4인 이내의 외부 위원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소송총괄부서의 송무담당 차장이 된다.

제3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송총괄부서 소송총괄 담당 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심의요청)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주무부서장은 관련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심의의안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각 위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소집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각 회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된 내용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 및 의사록에 기입한 후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38조(자료요청 및 조사)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부서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관계자의 의견청취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39조(심의결과 통보)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주무부서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주무부서장은 그 심의결과를 참조하여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심의결과의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은 주무부서장에게 경영심의회 등 중요사항 심의기구의 심의 절차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소송협의체의 활용)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장은 제14조의 소송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소송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송협의체를 대표하며, 심의결과는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이 경우 소송협의체는 제14조제1항의 자 중에서 4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송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법률자문

제41조(법률자문) ① 공사는 법률적인 자문에 관하여 사내변호사를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법률고문, 자문변호사 또는 관련 전문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 사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보수는 1건당 500만원 이내에서 소송총괄부서장이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8장 보칙

제42조(정보의 공개) 공사는 소송 및 법률자문 현황, 소송대리인 및 법률고문 현황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 홈페이지 및 정부 경영공시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3조(수당 지급) 이 규정에 따라 개최된 제14조의 소송협의체, 제22조의 소송대리인 선정 평가위원회, 제28조의 법률고문 추천심사위원회 및 제33조의 소송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제22조는 시행일 이후 접수된 소장 에 대한 응소 및 시행일 이후 제소 사건에 적용한다.

[별표1] (제18조 관련)

착수금 산정기준

소송물 가액	산정 기준	지급 기준액
300만원 이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구간 신설 지급 기준액은 종전 최저금액으로 함	80만원
300만원 초과 ~ 1,000만원 이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구간 신설 『변호사 보수 규정』 2,000만원 상한 300만원의 1/2까지 지급 $[160\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300\text{만원}) \times 20/100] \times 1/2$	80만원 초과 ~ 15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300\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1,000\text{만원}) \times 7/100] \times 1/2$	150만원 초과 ~ 29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580\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5,000\text{만원}) \times 6/100] \times 1/2$	290만원 초과 ~ 440만원 이하
1억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880\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1\text{억원}) \times 4/100] \times 1/2$	440만원 초과 ~ 540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1,080\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1\text{억5천만원}) \times 2/100] \times 1/2$	540만원 초과 ~ 590만원 이하
2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1,180\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2\text{억원}) \times 1/100] \times 1/2$	590만원 초과 ~ 740만원 이하
5억원 초과	$[1,480\text{만원} + (\text{소송물가액} - 5\text{억원}) \times 0.5/100] \times 1/2$	740만원 초과 ~ 5,000만원(상한)
1천억원 초과 조세소송	$5\text{천만원} + [(\text{소송물가액} - 1\text{천억원}) \times 0.5/100 \times 1/10]$	5천만원 ~

보상금증액소송 제1심의 소송물 가액은 최종 재결금액의 10%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최초 청구금액이 재결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2. 보상금 감액소송

[별표2] (제19조 관련)

보상금 증액소송 제1심 승소보수금 산정기준

- 증액률(판결금액/재결금액)이 3.5% 이하인 경우를 승소로 보고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화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1-(\text{증액률}/7)] \times \text{착수금}$$

[별표3] (제22조 관련)

제안서 평가표

<필요시 항목별 가감 평가 가능>

법무법인명(변호사)	
소송건명	

평가부문	구분	배점	평가 내용
소 송 수 행 능 력	소송내용 파악의 적정성	25점	· 소송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 · 유사사례(판례등) 확인 등 사건내용 검토가 충실한지 여부 · 쟁점사항 중 누락항목이 없는지 여부 등
	수행성실도 및 수행능력	30점	· 변론 진행계획, 증거자료 확보방법 등 소송 수행계획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 · 승소가능성 · 담당변호사 이외에 법인(법률사무소)의 전문팀(전문가) 등으로부터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등
	담당변호사 구성의 적정성	25점	· 사건 담당변호사(파트너 변호사 및 실무 변호사)가 유사소송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 담당변호사의 경력 등으로 보아 사건수행에 적합한지 여부
소송비용의 적정성 (공모 공고상 소송착수금 고정시 만점 처리)		20점	· 제안된 금액이 의뢰하는 소송을 수행하는데 적정한 금액인지 여부 (금액이 너무 높거나 낮지 않은지)

2000. 00. 00.

평가 위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	------	------	------	------

[별표4] (제28조 관련)

법률고문 공모 심사표

<필요시 항목별 가감 평가 가능>

☐ 평가대상(개인/법인) :

☐ 평가기준

구 분	배점	평가기준
조직 및 역량	40	○ 법조경력, 전문분야, 포상·수상경력 등 (변호사 자격 이외 전문자격 보유 여부) ○ 법률사무소 구성원 등 조직 역량 ○ 직무수행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 ○ 전문분야 소송, 자문 수행 실적
공사관련 수행실적	25	○ 공사의 사업, 역할, 기능에 대한 이해 ○ 공사업무 관련 소송 및 자문수행 경험
수행계획	25	○ 직무수행 계획의 적합성과 기여도 ○ 직무수행 계획의 충실도와 실행가능성
대외활동	10	○ 공사 업무 관련 각종 위원회 활동 ○ 공공기관 또는 각종 단체 공청회, 학회, 세미나 등 활동

☐ 평가표

구 분	배점	평가점수					
조직 및 역량	40	척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40	32	24	16	8
공사관련 수행실적	25	척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5	20	15	10	5
수행계획	25	척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5	20	15	10	5
대외활동	10	척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	8	6	4	2

2000. 00. 00.

총 점		평가위원	성명 :	(서명)
-----	--	------	------	------

[별지 제1호서식] (제22조 관련)

소 송 위 임 계 약 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의뢰인“이라 함)와 변호사
피고 간의

(이하 “소송대리인“이라 함)는 원고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의뢰인“은 “소송대리인“에게 위 사건의 제 심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제2조 “의뢰인“은 “소송대리인“에게 위임사무 처리의 착수금으로 금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제3조 “의뢰인“은 “소송대리인“에게 위임사무 처리상 필요한 인지대, 예납금(송달료, 법원의 납부명령에 따른 검증료, 감정료), 기록등사료, 출장여비 등을 지급한다.

(인지대, 예납금 환급계좌: ○○은행, 계좌번호 기재,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4조 위임사무가 전부 승소일 때에는 “의뢰인“은 “소송대리인“에게 금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승소보수금을 지급하며 일부 승소일 때 및 기타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의뢰인“의 소송업무규정을 따른다.

제5조 소송사건이 파기환송될 경우 환송심에 대한 별도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 계약으로 갈음하며 환송심에 대한 착수금은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제6조 “소송대리인“은 수임사항 중 소의 취하, 반소의 제기,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락, 상소권의 포기 등 중요한 소송행위를 할 때는 미리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소송대리인“은 수임사건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소송대리인“은 수임사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처리하고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소송대리인“은 소송수행 목적으로 “의뢰인“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유출방지 등 보호의무가 있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제반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소송대리인“이 이 계약서 제8조 및 제9조,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와 붙임 서식의 청렴서약서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의뢰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대리인“은 소송중인 법원에 사임계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소송대리인“은 수임사건이 승소(일부승소 포함)로 확정되어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야 할 경우 확정판결일로부터 4개월 내에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고, 결정정본을 “의뢰인“에게 송부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의뢰인“과 “소송대리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의뢰인“과 “소송대리인“은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의뢰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소

(인)

(소송대리인) 변 호 사
주 소

(인)

붙임 서식 : 청렴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각 1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22조 관련)

소 송 위 임 계 약 서 (보상금증액소송 제1심용)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의뢰인“이라 함)와 변호사 (이하 “소송대리인“이라 함)는 원고 피고 간의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의뢰인“은 “소송대리인“에게 위 사건의 제 심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제2조 “의뢰인“은 “소송대리인“에게 위임사무 처리의 착수금으로 금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이 경우 착수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소송물 가액은 최종 재결금액의 10퍼센트로 한다.

제3조 “의뢰인“은 “소송대리인“에게 위임사무 처리상 필요한 인지대, 예납금(송달료, 법원의 납부명령에 따른 검증료, 감정료), 기록등사료, 출장여비 등을 지급한다.

(인지대, 예납금 환급계좌: ○○은행, 계좌번호 기재,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4조 위임사무가 전부 승소일 때에는 “의뢰인“은 “소송대리인“에게 금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승소보수금을 지급하고, 일부 승소일 때에는 보상금 증액률(판결금액/재결금액)이 3.5퍼센트 이하 (소수점 둘째자리이하를 버린다)인 경우에 한하여 승소보수금을 지급하며,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의뢰인“의 소송업무규정을 따른다.

제5조 소송사건이 파기환송될 경우 환송심에 대한 별도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 계약으로 갈음하며 환송심에 대한 착수금은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제6조 “소송대리인“은 수임사항 중 소의 취하, 반소의 제기,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락, 상소권의 포기 등 중요한 소송행위를 할 때는 미리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소송대리인“은 수임사건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소송대리인“은 수임사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처리하고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소송대리인“은 소송수행 목적으로 “의뢰인“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유출방지 등 보호의무가 있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제반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소송대리인“이 이 계약서 제8조 및 제9조,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와 붙임 서식의 청렴서약서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의뢰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대리인“은 소송중인 법원에 사임계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소송대리인“은 수임사건이 승소(일부승소 포함)로 확정되어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야 할 경우 확정판결일로부터 4개월 내에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고, 결정정본을 “의뢰인“에게 송부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의뢰인“과 “소송대리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의뢰인“과 “소송대리인“은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의뢰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소

(인)

(소송대리인) 변 호 사
주 소

(인)

붙임 서식 : 청렴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각 1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제22조 및 제27조 관련)

[소송대리인용]

사건번호	
------	--

청 령 서 약 서

본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아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기는 경우 귀 공사와의 소송위임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1. 귀 공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가.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청탁

나. 귀 공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직무수행

1) 귀 공사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소송의 수임 또는 법률자문 수행 등

2) 귀 공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보조참가인을 위한 소송의 수임 또는 법률자문의 수행 등

다.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라. 미공개 정보이용

마. 기타 공사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 등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고 귀 공사의 관련 소송수행 직무를 회피합니다.

가. 귀 공사와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의 자문고문,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

나. 귀 공사와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민간사업자, 협회, 이해단체 등에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는 경우

다. 귀 공사와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경우

라.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친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0 . . .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수익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용역 [] 물품 [] 기타
	수익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대표자)	소속 (업체명)	[] 개인 [] 법인 [] 단체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익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LH 소속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 LH 소속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LH 임직원과 그 배우자, LH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③	LH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④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⑤	①부터 ④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⑥	①부터 ④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LH 임직원·공직자와 그 배우자, LH 임직원·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㉞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㉟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㊱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익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법률고문용]

청 령 서 약 서

본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률고문(자문변호사)으로서 아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기는 경우 귀 공사와의 법률고문(자문변호사)에서 해촉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1. 귀 공사의 법률고문(자문변호사)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가.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청탁

나. 귀 공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직무수행

1) 귀 공사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소송의 수임 또는 법률자문 수행 등

2) 귀 공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보조참가인을 위한 소송의 수임 또는 법률자문의 수행 등

다.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라. 미공개 정보이용

마. 기타 공사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 등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고 귀 공사의 관련 소송수행 직무를 회피합니다.

가. 귀 공사와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의 자문고문,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

나. 귀 공사와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민간사업자, 협회, 이해단체 등에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는 경우

다. 귀 공사와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경우

라.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친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0 . . .

한국토지주택공사 법률고문(또는 자문변호사)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제22조 관련)

(사건번호)

소 송 위 임 장

당사자 { 원 고
 피 고

위 당사자 간의

청구사건에 대하여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합니다.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4) 소의 취하 (5) 상급심에 대한 상소제기 (6) 청구의 포기 및 인낙 (7) 복대리인의 선임 (8) 목적물의 수령 (9)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10) 담보권 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결정 정본의 수령 및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등 (11)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및 취하 등

20 년 월 일

위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 장 ○ ○ ○ (인)
 주 소 :

지역본부장이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을 아래와 같이 표시한다.

위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 장 ○ ○ ○
 위 대리인 ○○지역본부장 ○○○○ (인)

[별지 제5호서식] (제22조 관련)

의 향 서

아래 법무법인(변호사)은 ○○사건(이하 “이 사건” 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송대리 수임 의향서를 제출합니다.

1. 법무법인(변호사)의 소개

2. 소송수행계획

가. 사건개요에서 도출된 쟁점

나. 대략적인 대응 논리 및 승소가능성

3. 기타 참고사항(소송수행사례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제22조 관련)

제 안 서

아래 법무법인(변호사)은 ○○사건(이하 “이 사건” 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송대리 수임을 제안합니다.

1. 법무법인(변호사)의 소개

가. 담당변호사 전문분야, 학력 및 경력

나. 유사 소송수행 경험 등

2. 소송내용 및 수행계획

가. 소송내용

(1) 사건의 개요

(2) 이 사건의 쟁점

(3) 유사사례(판례 등)

나. 소송수행 계획

(1) 대응방안(변론진행 계획, 증거자료 확보방법 등)

(2) 승소가능성

3. 업무범위 및 소송비용

가. 업무범위

나. 소송비용 :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업무규정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 및 소송 부대비용

4. 기타 참고사항(소송수행사례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제28조 관련)

법률고문 지원서

* 항목별 분량은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반드시 3장 이내로 작성하고 초과시 감점 *

1. 지원구분

지원구분 1) 개인변호사, (2) 법무법인 중 택 1(소속 변호사 수 000명)

2. 자기 소개 (법무법인의 경우 법인 및 전담변호사 관련 사항만 기재)

가. 인적사항

사 진 (3*4cm)	성 명	000 (한자) 000		
	생년월일	(00.00.00) 00세	법조경력	년
	전 화	(000)000-0000	이메일	@
	소 속	(소속변호사 수) 명		
	주요 자격증 (변호사자격증 제외)	자격증명, 발급기관, 발급일자		

나. 학력

기 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대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원		
년 월 ~ 년 월	대학원		

다. 경력 (판사, 검사, 고문 경력 중심으로 작성, 공사 경력은 퇴직일자 포함 필수 기재)

기 간	기 관	고문/근무시 직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라. 최근 5년간 전문분야 주요 소송 및 자문 실적 (공사 관련 제외)

구분(소송/자문)	관련 기관	주요 내용

마. 최근 5년간 공사 관련 주요 소송 및 자문 실적

구분(소송/자문)	사건번호(소송)	주요 내용

3. 업무수행 계획

* 소송/자문 및 기타 수행 가능한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4. 기타 참고사항

최근 5년간 대외활동 실적 (공사 및 공공기관 위원회, 학회, 공청회, 세미나 등 활동)			
구 분	내 용		

* 법무법인은 필요한 경우 전담변호사 외 지원 가능한 2인 이내 담당변호사 및 전문인력 관련 사항(생년월일 및 공사 경력은 퇴직일자 포함 필수) 기재 가능

성명	000	구분	담당변호사/전문인력
생년월일	(00.00.00) 00세	(담당변호사) 법조경력	년
주요자격증(변호사자격증 제외)	자격증명, 발급기관, 발급일자		
학 력	학 교 명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대학교		
경 력	기 관	고문/근무시 직위	비 고
년 월 ~ 년 월			

상기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 사실과 다른 경우 해촉 등 귀사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인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법률고문 공모에 지원합니다.

20 . . .

위 지원인 : (날인 또는 서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청 령 서 약 서

본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률고문 지원인으로서 법률고문으로 위촉될 경우 아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기는 경우 귀 공사와의 법률고문에서 해촉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1. 귀 공사의 법률고문으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가.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청탁

나. 귀 공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직무수행

1) 귀 공사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소송의 수임 또는 법률자문 수행 등

2) 귀 공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보조참가인을 위한 소송의 수임 또는 법률자문의 수행 등

다.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라. 미공개 정보이용

마. 기타 공사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 등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고 귀 공사의 관련 소송수행 직무를 회피합니다.

가. 귀 공사와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의 자문고문,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

나. 귀 공사와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민간사업자, 협회, 이해단체 등에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는 경우

다. 귀 공사와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경우

라.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친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0 . . .

서약인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증명사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학력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자기소개 관련 정보, 기타 위촉을 위해 본인이 작성한 관련 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위촉절차의 집행 및 관리, 경력·자격 등 확인, 위촉 여부의 결정, 민원처리에 사용 됩니다. ① 본인 확인 및 범죄경력 조회에 이용: 생년월일, 성명, 증명사진 ② 지원자와의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③ 지원자 평가에 이용: 학력, 자격사항, 경력사항 등 ④ 단, 지원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지원서 제출 후 위촉기간 만료 시 또는 지원서 삭제 요청 시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 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위촉 및 사후관리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지원서 제출 후 위촉기간 만료 시 또는 지원서 삭제 신청 시까지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자격요건 등 검증을 위한 동의]

본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법률고문 공개모집 공고」에 따른 지원자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제출서류
(경력증명서,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 등)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며,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 법률고문으로 위촉됨에 있어 법률고문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한국토지주택
공사 홈페이지에 법률고문 위촉현황(본인의 성명, 소속, 위촉기간) 등을 공개하는데 동의합니다.

자격요건 등 검증에 동의함 ☐ 자격요건 등 검증에 동의하지 않음 ☐

[고문변호사 정보공개 동의]

공개내용	본 변호사(법무법인)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법률고문으로 위촉될 경우, 아래 내용에 대해 공개하 는데 동의합니다. ① 고문변호사 위촉현황(변호사명, 소속, 위촉기간) 및 자문실적 ② 고문변호사별 소송사건 수임 현황 및 소송실적 등
------	--

고문변호사 정보공개에 동의함 ☐ 고문변호사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음 ☐

※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위촉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동의하고, 상기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였습니다.

20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제36조 관련)

소송심의위원회 부의안

의안번호	제 20 - 호
의결일자	20 년 월 일 (제 회)

제 목	
-----	--

제 출 자	○○○○ 처장
제 출 일자	20 년 월 일

의 결 사 항

- 1. 제안요지
- 2. 제안사유
- 3. 주요골자
- 4. 참고사항

붙임 : 검토보고서, 참고자료 등

[별지 제9호서식] (제37조 관련)

소송심의위원회 소집통지서

수 신 :

“소송업무규정” 제26조에 따라 20 년 제○○회 소송심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20 . . :

○ 장 소 :

○ 의 안 :

붙 임 소송심의위원회 심의의안 1부. 끝.

년 월 일

간사

(인)

[별지 제10호서식] (제37조 관련)

20 년도 제 회 소송심의위원회 심 의 의 결 서

1. 의결주문

20 년도 제 회 소송심위원회 부의안을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2. 의결내용

3. 심의위원

구 분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붙 임 : 소송심의위원회 의사록 1부. 끝.

간 사

소송심의위원회 의사록

(의안 제 20 - 00호)

1. 일 시 :

2. 장 소 :

3. 건명 및 위원

○ 건 명 :

○ 위원장 :

위 원 :

간 사 :

4. 주요 심의내용

5. 의결결과

소송심의위원회 위원장